

##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폐업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충청북도 영동군수

상호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 업종	등록말소 년월일	폐업 사유	비고
창신건설 (주)	장순택	151311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5길 2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충북영동08-11-03)	'15.1.30.	사업 포기	자진 반납